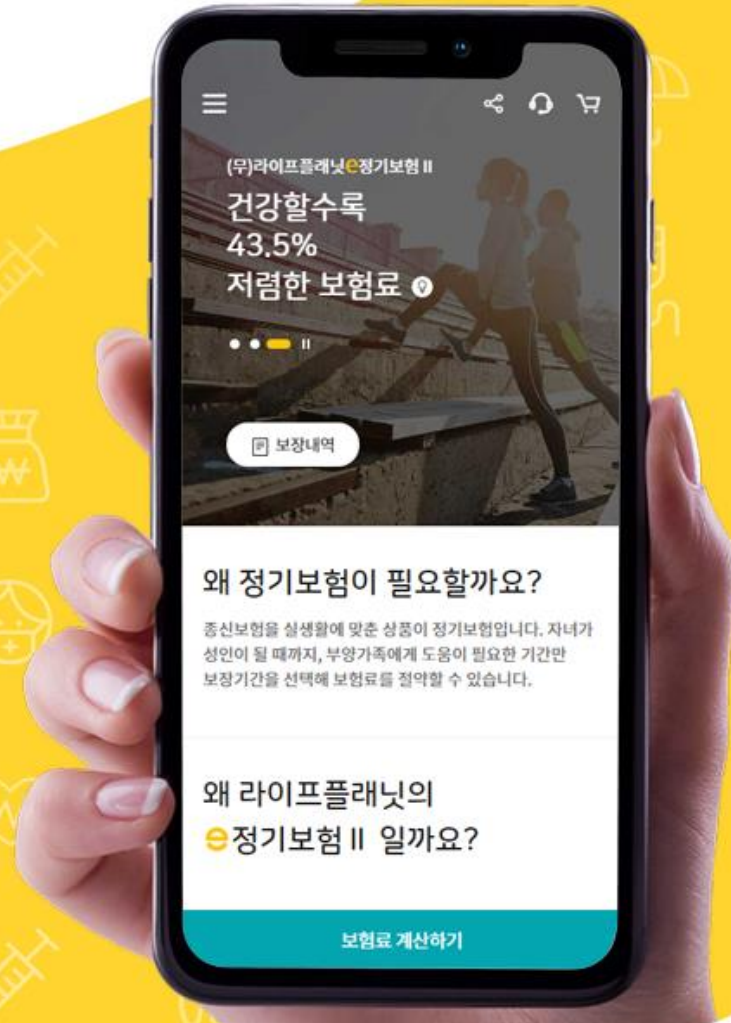


[제14회 KIRI 산학세미나] 디지털전환과 피보험자 본인확인

2021.3.26(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생명이 설립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디지털 생명보험사

전통적인 보험사와는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기술로 합리적인 상품을
고객 스스로 쉽고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Moody's A1, 한국기업평가 AAA의
교보생명 자회사
(교보생명 지분 100%)



디지털 생명보험
5년 연속 1위
(시장점유율 35.6%)



月평균 신계약 8.6천건
MAU 100만 +
(최근 3개월 평균)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타인(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피상이계약)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자서명이 허용됨

 법무부		국민의 권익 증진 보 다 나 은 정부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2018. 11. 1.(목) 10시부터 보도			총 4쪽(붙임 2쪽) / 사진 없음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과장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02)2110-3167			담당자	검사 조재철 02)2110-3631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이 '18. 11. 1.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종전 상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 상법 시행령 개정안

-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자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44조의2제1호)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부정사용이나 위조·변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관련 요건을 신설
 - 보험모집인 등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안 제44조의2제2호)
 - 사후적으로 서명자가 피보험자가 본인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지문 인식 등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식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제3호)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44조의2제4호)

○ 고시(「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지문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사후적 비교검증 수단 및 안전 조치 사항을 추가
 - 피보험자의 생명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서면동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 전자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정보 기술을 통해 피보험자 명의 도용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 ※ 지문 이외의 바이오정보는 피보험자 사망 후에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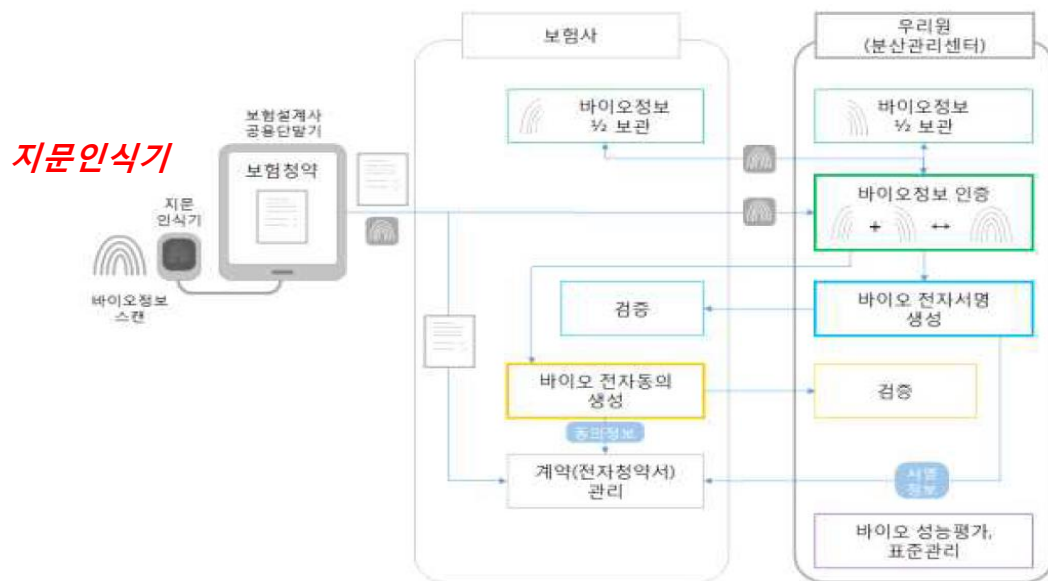
업계 현황(대면 채널)

'20.11월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설계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함

시스템 도입 前

- 고객 :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 추가 제출
- 설계사 : 피보험자 방문 및 서면동의서 징구 (서면동의서 촬영 후 회사 전달)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청약업무 프로세스(안)



Process



- 금융결제원과 공동 개발
- 최초 개발시 업계 공동사용 목적으로 구축 예정이었으나 현재 삼성생명만 사용할 수 있어 공용 활용 제한적임

보험소비자 거래의 편의성 측면과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 활성화 목적의 상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상법 개정 前

• 금융위, '금융규제개혁 제안 과제 검토결과'(14.7.24.)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됨

보험과 (법무부 협업) ◁2-245> ◁2-347>	상법 제731조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을 서면으로 한정 - 상법상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방식 활용 불가 - 피보험자의 동의에 전자서명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전자서명법 §3①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법 개정은 불필요	기시행
--	-------------	---	--	-----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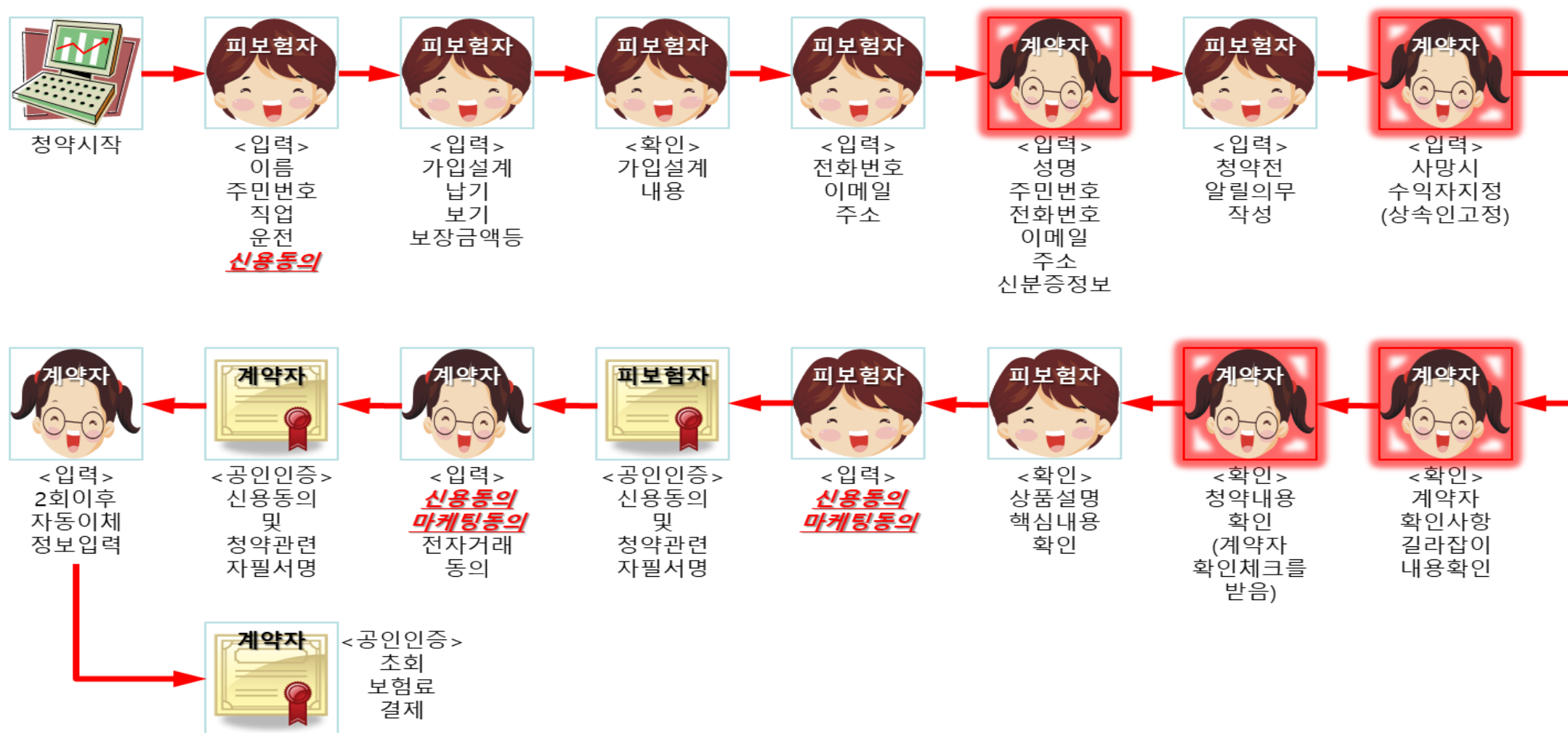
• 상법 및 상법시행령 개정(의견)에 따라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
대면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비대면채널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게피상이 계약
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상법시행령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제1항 제2호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제1항 제2호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업계 현황(인터넷보험)

상법 개정 前 계피상이계약을 인터넷으로 진행한 보험사도 있었음



업계 현황(모바일 단체보험)

상법 제735조를 근거로 단체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구성원이 되어 서면 동의 없이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플랜 선택
운동 종목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1년 가입 | 3개월 가입

종합운동플랜
(약관상 위험 2급+3급)
67개 종목 보장 추천
9,680원

경기/트레킹/등산, 축구/족구, 헬스/보디빌딩,
자전거/사이클, 요가/필라테스, 실내수영,
배드민턴/탁구 등 67개 종목

보장종목 확인

기본운동플랜
(약관상 위험 3급)
36개 종목 보장
4,970원

자전거/사이클, 요가/필라테스, 배드민턴/탁구,
골프 등 36개 종목

보장종목 확인

보장내용 자세히보기

확인

다음

정보 입력
보험에 가입할 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된 이메일로 가입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름 오대현
휴대폰 번호 010-5008-4481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이메일 주소
[Redacted]

다음

가입 내용 확인
가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로 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보험계약정보

상품명 운동보험
종합운동플랜 (약관상 위험 2급+3급)

보험사 메리츠화재

가입기간 2021-03-18 00시 ~
2021-06-18 00시 (3개월)

보장내용 보기

가입자 정보

이름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휴대폰번호 [Redacted]
이메일 [Redacted]

9,680원 결제

확인

보험계약정보

상품명 운동보험
종합운동플랜 (약관상 위험 2급+3급)

보험사 메리츠화재

가입기간 2021-03-18 00시 ~
2021-06-18 00시 (3개월)

정보 동의

기타 설명
고객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이용에 관한 기타 부가 설명을
숙지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해지 사고 접수 안내
보험계약의 해지, 사고접수 등의 경우 콜센터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메일 수령 동의
고객은 본 상품의 가입증서 및 약관을 이메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함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안전하게 결제됩니다.

pay 머니

원제금액 2,150원
자동충전 10,000원
승전계좌 국민 ***5691

카카오페이증권

페이포인트 보유 6 모두사용

결제조건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9,680원 결제하기

© Kakao Pay Corp.

운동보험 보장금부

스포츠 활동 중

- 상해사망/상해휴유장해/돌연사위험
- 상해입원일당/상해통원일당
- 골절치료비/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
- 배상책임

※ 상법 제753조의3(단체보험)

-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책당국(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에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 **(현행)**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제기

* 현행 제도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

- ⇒ **(개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 추진

* 예: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 가입
- (설계사)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 선택 가능

□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 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추진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 허용

*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금융보안원 검증 필요

< 기대 효과 >

- (소비자)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 확대 가능



- 골드만삭스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 -

2015년 골드만삭스의 IT(정보통신)기업 선언 당시
금융업계는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

현재 대다수 금융사는 디지털전환을
생존 문제로 인식

2021년 금융사 CEO 신년메시지 핵심 키워드
'디지털(Digital)'



- 카카오뱅크 윤호영 CEO -

*“언택트(Untact)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만남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콘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일상을 더 편리하게 연결하고 혁신하는게 관건*

*기술을 통해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콘택트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는 금융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